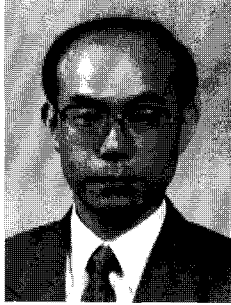


기업 구조조정과 부당내부거래



조 학 국
공정위 독점국장

1. 기업 구조조정은 경제 위기 극복의 열쇠

현재 우리 경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말 외환위기에서 촉발된 총체적인 경제위기와 IMF관리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과감한 구조조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개혁의 기본원리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본원리 아래 기업, 금융, 노동시장, 재정 및 공공부문 등 경제전반에 걸쳐 구조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기업 구조조정은 이러한 개혁작업의 일부분이지만 그 의미로 볼 때 전체적인 개혁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기업은 나라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글로벌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부문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거듭난 '경쟁력 있는 기업'은 기업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금융의 건전성 제고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과 선진경제 진입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시장경제의 확립을 통한 기업의 체질개선이다. 국경 없는 경제의 출현과 세계시장의 통합화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경쟁에 직면하게 되면서 더이상 정부의 지원과 보호 속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고 정부도 과거의 규제위주 시책에서 탈피하여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경제의 각 분야에 철저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2. 기업 구조조정, 부당내부거래 근절에서부터

이와 같이 기업 구조조정의 해법을 시장경제의 확립에서 찾는다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문제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적 과제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내부적·외부적 감시와 견제가 작동되지 않는 낙후된 기업환경속에서 소위 '船團式經營'을 통해 무리한 계열확장을 이루어 왔다. 상호채무보증과 내부거래 등을 통하여 계열기업을 거미줄처럼 연결시키는 한편 계열기업이 속한 시장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갖도록 지원해 온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내부거래가 일률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업입장에서는 외부시장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외부시장을 통한 자원조달시 높은 거래비용이 수반될 경우 기업집단 내부의 계열사를 통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열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품, 용역, 자금 등이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된다면 이는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대기업집단에 소속되지 못한 독립기업들은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비하여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어 공정한 경쟁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축구경기에서 한쪽은 정규인원으로 뛰고 다른 쪽은 그보다 몇배나 많은 선수가 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독립기업의 존립기반을 박탈하고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조장하는 폐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쟁력이 없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한계기업도 계열회사들로부터 자금 또는 자산 등을 지원받아 존속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게 된다. 특히 이러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는 보통 기업집단 내 우량계열사가 지원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우량계열사마저 함께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부당내부거래는 기업들이 한계기업을 조속히 정리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중대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또한 지원주체인 우량계열사의 소액주주로서는 자기가 주주인 기업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어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3. 부당내부거래의 유형과 판단기준

부당내부거래는 대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의 경쟁제한적인 내부거래행위로서 상품과 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자금, 자산 및 인력의 거래에 있어서도 발생한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후자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상품과 용역의 부당내부거래가 주로 수직통합된 계열회사간에 이루어지고 그 효과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반면 자산·자금·인력지원행위는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회사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효과도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범위를 당초 상품·용역거래에서 자산·자금·인력 지원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부당내부거래의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상품과 용역의 경우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대동소이하다. 즉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위하여 비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 또는 중단하거나 타계열회사에 비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차별취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예컨대 A사가 엘리베이터 설치

부품인 가이드레일을 공급하면서 동일한 규격과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B사에 공급하는 가격을 비계열회사인 C사보다 저렴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부당한 자산·자금·인력지원은 가지급금, 대여금,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인력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대체로 우량계열사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부실계열사 또는 신규 투자자금수요가 큰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나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건실한 계열사가 고가로 매입해주거나 계열사의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 또는 임차해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이러한 지원과정에서는 계열기업간의 직접적인 거래외에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적인 거래방식이 이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우량계열사인 A사가 부실계열사인 B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해주고자 할 때 은행의 신탁계정등을 경유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행위유형들이 부당내부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행위에 대한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당해시장의 구조,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시장개방 정도 등 당해시장에 대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에 대하여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서 지원규모별로 중점심사대상과 구체적인 부당성 판단기준을 두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가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지침에서는 부당지원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첫째, 중점심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둘째, 부당성 판단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먼저 중점심사대상이 아닌 사항은 부당지원행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낮다. 중점심사대상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지원주체이고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지원주체의 계열회사가 지원객체인 경우로서 지원크기가 대규모인 경우이다.

중점심사대상이 되면 부당지원인지 여부를 정밀판단하게 된다. 중점심사대상으로서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부당지원행위인 것으로 판정된다. 첫째,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특정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둘째, 지원객체가 속하는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여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넷째, 지원행위로 인하여 특정시장에서 진입이나 퇴출이 저해되는 경우, 다섯째, 지원금액이 1년간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등 대규모지원이 있을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상정한다.

4.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방향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고 기업이 핵심역량위주로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현재 5대 기업집단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나 하반기에는 나머지 30대 기업집단으로 조사대상을 전면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내부거래행위가 근원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와 회계정보의 공시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99회계연도부터 시행될 결합재무제표가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작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용어해설

카르텔 Cartel

기업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 통제(독점화)를 목적으로 동일산업분야의 기업들이 협약(協約) 등의 방법에 의해 연합하는 형태를 말함. 경쟁기업들은 카르텔(Cartel)을 통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가격의 자율조절 등 시장통제력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독점이윤을 갖는 등 독점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게 됨. 카르텔은 참가기업들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기업활동·결합(Trust)과 구별됨. 일반적으로 카르텔이 발생 또는 유지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① 참가기업이 비교적 소수일 것, ② 참가기업간의 시장점유율 등에 차이가 적을 것, ③ 생산 또는 취급상품이 경쟁관계에 있을 것, ④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등임. 공정거래법은 카르텔에 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또한 카르텔은 공공카르텔과 사적 카르텔로 구분되는데, 사적 카르텔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여러가지 조건과 제한을 형성하는 것으로 각각 나름대로 독점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공공카르텔은 정부가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일명 정부카르텔이라고도 함. 이러한 정부카르텔은 많은 나라에서 가격과 생산의 안정이나 산업구조의 합리화 및 생산능력 조절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일본은 철강, 알루미늄, 선박 건조 및 화학분야 등에서 정부카르텔 규제를 인정해 왔으며, 미국은 1936년대 불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석탄채취, 석유 생산분야 등에서 정부카르텔 규제를 인정하였음. 카르텔은 국가간에 행해지기도 하며,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의한 석유나 커피, 실탕 등에 대한 국제상품협정이 국가간에 형성되는 카르텔(국제카르텔)의 대표적인 예임.